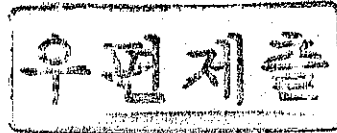


답변서



사 건 2017재나698 기타(금전)

원 고 임그루

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재심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

1.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 2.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2927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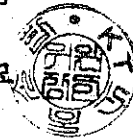
재심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1.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모두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10. 25

피고 케이티 노동조합

대표자 위원장 정운모



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귀중